

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19. 6. 11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서민우 의원 외 6명
- 발의일자: 2019. 5. 20.
- 회부일자: 2019. 5. 31.
- 상정 및 의결: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. 6. 11.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다문화가족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통합프로그램을 운영·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## **나. 개정 주요내용**

-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
(안 제7조제2항제7호)
-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·예술·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2항제8호)

## **다. 관계법령**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## 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[정온주 전문위원]**

-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영역의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·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
- 주요 내용으로는
  - 안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
  - 안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·예술·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·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## ○ 검토결과

- 금번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화·구체화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, 예체능 분야 통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·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·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,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조례 조문상 내용 및 상위 법령상 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:** 특이사항 없음

**5. 토론요지:** 특이사항 없음

**6. 심사결과:** 원안가결